

사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8
----------	---

제안일자 : 2003. 3. 4.

제안자 : 사 천 시 장

1. 개정이유

- 가. 행정자치부의 지방상수도 요금인상 및 요금체계 개선 추진지침에 따라 상수도 사용요금 인상과 누진단계 조정, 업종을 통·폐합
- 나. 관련 법률의 제명이 변경되어 이를 개정하고, 일부 불합리한 조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코자 함.

2. 주요골자

- 가. 생활보호법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제명 변경(안 제13조제1항)
- 나. 상수도 사용요금 평균 20% 인상 및 누진단계 조정(안 제32조제1항 별표 2)
- 다. 업무용, 영업용, 옥탕2종을 일반용으로 통합하고, 옥탕1종을 대중탕용으로 명칭변경(안 제33조 제1항 별표 3)
- 라. 누수감면제도의 보완(안 제35조제3항, 제42조제4항)
- 마. 수도계량기 검침등의 위·수탁 업무를 현실에 맞게 조정(안 제50조제1,2,3,4,5항)
- 바. 징수관련 규정 보완(안 제52조)

3. 법적근거

- 가. 지방공기업법 제22조(요금)
- 나. 지방세법 제3조(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4. 주요 토의과제 : 없음

5.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발췌 : 따로붙임
- 나. 요금인상에 따른 세입증대 효과
 - 현 행 : 5,359백만원

○ 인상후(20%) : 6,429백만원

○ 예상수익 : 1,070백만원

다.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붙임

(2) 물가실무대책위원회 심의

가) 심의일자 : 2002. 12. 13.

나) 심의결과 : 원안대로 가결

(3)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가) 심의일자 : 2002. 12. 24.

나) 심의결과 : 원안대로 가결

(4) 입법예고

가) 입법예고기간 : 2003. 1. 24 ~ 2. 12.(20일간)

나) 예고방법 : 신문게시공고(경남일보, 경남신문) 및 인터넷,
시·읍·면·동 게시판 게시공고

다) 의견제출내용 및 반영 : 미반영

- 미반영사유 : 의견제출사항 없었음

(5) 규제심사 : 해당없음

사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사천시수도급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중 “생활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와 의료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부조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로 한다.

제35조제3항중 “옥내 지하누수 발생시”를 “지하누수 발생시 발견한 당월을 기준”으로 한다.

제42조제4항중 “시공업자”를 “시공업자 등”으로 하고, “수도요금”을 “당월누수량”으로 한다.

제50조제1항중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하수도사용료 부과·징수 및 체납관리 업무를 수탁처리할 수 있다”를 “법인 또는 계약검침원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로 하고, 동조제2항중 “1,000만원”을 “1억원”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위·수탁”을 “위탁”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제1항의”를 삭제하며, 동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사천시수도사업설치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자는 하수도사용료 부과·징수 및 체납관리업무를 수탁처리할 수 있다.

제52조중 “징수”를 “징수 및 결손처분”으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및 별표 3은 2003. 6월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개정전)

[별표2] <개정 2002. 1. 10>

상수도 사용요금 및 구경별 정액요금

구분 업종별	사 용 요 금		구경별	구경별 정액요금 (1전당/원)
	단계별 (m ³)	요 금 (원)		
가정용	1-10	400	13m/m	1,340
	11-20	570	20m/m	2,600
	21-30	640		
	31-40	710	25m/m	4,180
	41-50	780		
	51이상	850		
업무용	1-20	700	32m/m	7,440
	21-50	830	40m/m	12,550
	51-100	930		
	101-300	1,030		
	301이상	1,130	50m/m	19,250
영업용	1-30	790	75m/m	46,680
	31-50	900		
	51-100	1,040	100m/m	79,590
	101이상	1,180		
욕탕1종	1-200	720	150m/m	173,420
	201-300	800		
	301-500	880	200m/m	252,010
	501이상	1,000		
욕탕2종	1-200	1,130	250m/m	339,900
	201-500	1,320		
	501-1000	1,620	300m/m	409,920
	1001이상	1,990		
전용공업용	사용량	550		

※ 사용요금의 산출은 총사용량을 단계별로 누진 적용한 산출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후)

[별표2]

상수도 사용요금 및 구경별 정액요금

구분 업종별	사 용 요 금		구 경 별	구경별 정액요금 (1전당/원)
	단 계 별 (m ³)	요 금 (원)		
가정용	1-20	560	13m/m	1,610
	21-30	780	20m/m	3,120
	31이상	970	25m/m	5,020
일반용	1-50	930	32m/m	8,930
	51-100	1,200	40m/m	15,060
	101-300	1,250	50m/m	23,100
	301-500	1,360	75m/m	56,020
	501이상	1,440	100m/m	95,510
대중탕용	1-500	930	150m/m	208,100
	501-1,000	1,250	200m/m	302,410
	1,001-1,500	1,300	250m/m	407,880
	1,501이상	1,360	300m/m	491,900
전용공업용	톤당	690		

※ 사용요금의 산출은 총사용량을 단계별로 누진 적용한 산출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전)

[별표3] <개정 97. 1. 8>

업 종 구 분 표

업 종	구 분 내 용
가 정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사전용 또는 공용급수전에 의한 가정용급수 단, 공용급수전에 대하여는 기본요율을 적용 ○담배·연탄·양곡·문방구·지물·철물등의 소매업 및 복덕방·인장업·행정서사업·수예점·만화가게등으로서 10m²미만의 소규모가게 ○고아원·영아원·양로원·탁아소·모자보호·노인요양·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업 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중 타업종에 속하지 않는 모든업소 ○시설소화전 ○관공서·병영·학교·유치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50%이상 출자출연한 법인 및 단체(생산,제조용수 제외) ○종교단체·방송국·신문사·정당·국가·유공단체·사회단체(사회단체 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공익단체)새마을금고·농협·수협·축협의 중앙회 및 지사무소·사회복지시설
영 업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식품접객업(식품위생법상의 대중음식점·유호접객업·과자영업점·다방·휴게실 등)·공연장(극장포함)·숙박업(여인숙제외)·시설도축장·유기장·노래방·백화점·도매센터·대규모 소매점·자동차정비업·주차장·세차장·주유소·운송 또는 관광업·예식장·사설학원·사진현상소·양조업·주조업(주정포함)·의약품·화공약품·화장품제조업·금은방·제빙·냉동냉장업·청량음료제조업(유산균 음료 포함)·병원(의원제외)·은행(보험회사,시설금융조합) ○체육시설업(체육도장,탁구장 제외) ○단기급수를 목적으로 임시 개설한 급수전(건축허가를 받아 시공중인 건물 : 입주전까지 운반급수 최종단계 요율 적용) ○별도 급수전에 의한 선박용 급수·수도관 파손에 의한 누수(최종단계요율적용) ○제혁업·염색업·도금업·요업·페인트류제조업·석재가공업·식품가공업
욕 탕 1종	○일반목욕장업
욕 탕 2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수목욕장업(공중위생법에 의한 사우나탕, 복합목욕장업) ○실질적인 특수목욕탕업을 운영하는 안마시술소(발한실을 포함한 욕실면적이 보사부 규정상 시설기준(90m²)을 초과하거나 욕실 및 발한실, 시술실, 탈의실외에 별개의 휴식장을 갖춘 안마시술소)
전용공업용	○공업단지등 일단의 공업전용지역에 별도 설치한 배수관에 의한 급수

(개정후)

[별표3]

업 종 구 분 표

업 종	구 분 내 용
가 정 용	○전용 또는 공용급수전에 의한 가사용 급수 ○담배·연탄·양곡·문방구·지물·철물등의 소매업·부동산중개업·인장업·행정서사업·수예점·만화가게·구멍가게 등으로서 10㎡미만의 소규모 가게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사회복지수용시설 및 국가유공자단체
일 반 용	○타업종에 속하지 않는 모든 급수
대 중 탕 용	○일반 대중 목욕장업
전용공업용	○공업단지등 일단의 공업전용지역에 별도 설치한 배수관에 의한 급수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3조(공사비의 선납)</p> <p>①급수공사 승인을 받은 급수공사 신청자는 급수공사비를 시장이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지정기일내에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u>생활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와 의료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부조대상자의 급수공사비는 6개월의 범위안에서 분할 납부할 수 있다.</u></p> <p>②제1항의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 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p> <p>③선납된 공사비는 공사준공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후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부 또는 추징한다.</p>	<p>제13조(공사비의 선납)</p> <p>①....., <u>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u> <u>에 의한 수급권자</u>.....</p> <p>②(현행과 같음)</p> <p>③(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제35조(사용수량의 인정)</p> <p>①사용수량은 수도계량기에 의하여 계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시장이 인정하는 사용수량에 따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 2.사용수량이 불명확할 때 3.기타 인정계량이 불가피할 때 <p>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는 급수전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수도계량기 이상의 귀책사유가 수용가에게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 3년간 동일 납기분과 현년도중 최고 급수량 및 수복 후 일일 평균 사용량 중 최고 수량에 의거 계량한다. 2.수도계량기 이상의 귀책사유가 수용가에게 있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상회전한 전 3개월분 일일평균 사용량과 수복후 일일평균 사용량 중 최고수량에 의거 인정계량한다. <p>③계량기 설치이후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없이 <u>옥내 지하누수발생시</u> 전 3월의 월평균 사용량을 정상 사용수량으로 산정하고 초과수량은 누수량으로 본다.</p>	<p>제35조(사용수량의 인정)</p> <p>①(현행과 같음)</p> <p>②(현행과 같음)</p> <p>③..... <u>지하누수 발생시 발견한 당월을 기준</u>..... </p>

현 행	개 정 안
<p>제42조(요금 등의 감면)</p> <p>①시장은 공익상 기타 필요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p> <p>②수도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수도를 설치완료하고 사용중인 자에 대하여는 중수도 사용량에 해당하는 당해 업종의 수도요금을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감면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가정용은 중수도 사용량의 30퍼센트 2. 업무용은 중수도 사용량의 15퍼센트 3. 영업용은 중수도 사용량의 10퍼센트 4. 목욕탕은 중수도 사용량의 10퍼센트 <p>③중수도 사용자가 수도요금을 감면받고자 할 때에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p> <p>④ 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누수량에 대한 수도요금을 감면 받고자 할 때에는 <u>시공업자의 누수복구확인서</u> 및 사진을 제출하고 공무원 확인 등을 거쳐 <u>수도요금</u>의 2분의1을 감면할 수 있다.</p>	<p>제42조(요금 등의 감면)</p> <p>①(현행과 같음)</p> <p>②(현행과 같음)</p> <p>③(현행과 같음)</p> <p>④.....</p> <p>..... <u>시공</u></p> <p><u>업자</u> 등</p> <p>.....</p> <p>..... <u>당월 누수량</u></p> <p>.....</p>

현 행	개 정 안
<p>제50조(수도계량기 검침등의 위·수탁) ①시장은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도계량기 검침 및 고지서의 송달업무를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 및 체납관리업무를 수탁처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법인은 자본금 1,0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③제1항의 위·수탁을 함에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공탁금 예치 또는 담보설정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위·수탁에 관한 수수료 산정기준, 위·수탁업무 처리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u><신 설></u></p> <p>제52조(지방세 예의 준용)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요금, 가산금, 수수료, 과태료, 기타 일체의 징수금의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u><신설></u></p>	<p>제50조(수도계량기 검침등의 위·수탁) ①..... 법인 또는 계약검침원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1억원..... ③..... 위탁 ④위·수탁에 관한 수수료 산정기준, 위·수탁업무 처리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⑤사천시수도사업설치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자는 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 및 체납관리업무를 수탁처리할 수 있다. 제52조(지방세 예의 준용) 징수 및 결손처분..... </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및 별표 3은 2003. 6월 검침분부터 적용한다.</p>

법령발체내역

사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 2002.3.25 법률 제6665호 행정자치부]

第7條 (管理者) ①地方自治團體는 地方直營企業의 業務를 管理·執行하게 하기 위하여 事業마다 管理者를 둔다. 다만, 條例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同質 또는 類似한 事業에 있어서는 2이상의 事業에 걸쳐 醫療事業에 있어서는 病院마다 管理者 1人을 둘 수 있다.<改正 1980.1.4, 1992.12.8>

②管理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公務員중 地方直營企業의 經營에 관하여 知識과 經驗이 풍부한 者중에서 地方自治團體의 長이 任命하며, 任期制로 할 수 있다.

<改正 1992.12.8>

第22條 (料金) ①地方自治團體는 地方直營企業의 給付에 대하여 條例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料金を 徵收할 수 있다.<改正 1992·12·8>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料金は 적정하여야 하고, 地域間 料金水準의 衡平을 기하여야 하며, 이를 決定 함에 있어서는 당해 地方直營企業이 제공한 給付의 原價를 報償함과 아울러 企業으로서 繼續性を 維持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改正 1980·1·4, 1992·12·8>

③제1항의 規定에 의한 요금의 산정방식은 營業비용 및 자본비용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2.3.25>

④料金の 徵收에 관하여는 地方稅徵收의 例에 의한다.

지방세법

[일부개정 2002.8.26 법률 제6705호 행정자치부]

제3조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①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의 세목, 과세객체, 과세표준, 세율 기타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서는 이 법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조례로써 하여야 한다. [개정 9

8·12·31]

②삭제 [88·4·6]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조례의 시행에 따르는 절차 기타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사천시수도사업설치조례 [1995. 6. 1 조례 제117호]

개정 1999. 5. 12 조례 제367호

제 4 조 (관리자의 지정) ①상수도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인을 둔다.

②관리자는 수도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보한다.